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Arbitration Systems between Mongol and Korea

김 석 철**
Suk-Chul Kim

〈목 차〉

- I. 서 론
 - II. 한·몽골 경제교류 및 무역중재 현황
 - III. 몽골 중재제도의 발전과정 및 현황
 - IV.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 V. 몽골 중재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 VI.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몽골중재제도, 몽골임의중재, 몽골중재법, 몽골중재판정부, 중재절차

* 본 논문은 한국중재학회 몽골국제학술대회 (2013.7.10~15)에서 발표한 것을 보충하여 재구성한 것임,
이 논문은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론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으로는 깊은 관계가 있으나, 근대사에 와서는 몽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공산국가였던 관계로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한국의 88올림픽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은 몽골과 수출 미화 4억3천3백만달러, 수입 5천3백5십만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에는 연방제국가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친근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 간의 인적 교류도 많아져 몽골인구의 약 10% 정도가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오고 있으며, 유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몽골은 몽골반점이라는 동질성으로 상호 간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의 자연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로 상호보완적인 경제교류의 필요성도 있어 향후 발전의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에서 볼 때 국제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양국 간의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 간에는 아직 중재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태는 아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몽골국립중재법원 간에 중재협상은 체결되었으나,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처리한 몽골과의 중재건수는 4건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몽골간의 인적·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인 한국과 몽골의 중재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몽골 간의 경제교류 현황, 한·몽골 중재발생 현황, 몽골 중재제도의 발전 과정, 몽골국립중재법원의 조직과 중재처리 현황, 그리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한국과의 비교 및 유의사항 등을 다루었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몽골 경제교류와 무역중재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중재제도와 비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한 후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맺었다.

II . 한·몽골 경제교류 및 무역중재 현황

1. 한·몽골 교역 현황

(1) 연도별 교역 현황

몽골은 1921년 러시아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 이념이나 제도도 러시아 식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함께 몽골도 1990년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2011년 기준 몽골은 280만명의 인구에 총GDP는 미화 68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2,436달러로 아직 경제수준은 낮다.¹⁾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한국이 1985년에 미화 54만달러를 수입한 것이 처음이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몽골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교역량은 크게 성장하여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1988년 미화 6,697만달러에서 2012년에는 미화 4억3,346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연년도별 한국의 대몽골 수출입 현황

(단위: US\$)

연도	수출	수입	계
2012	433,456,510	53,598,174	487,046,684
2011	349,873,636	60,622,796	410,496,432
2010	191,630,906	38,839,320	230,470,226
2005	77,621,213	4,894,921	82,516,134
2000	54,672,369	2,076,854	56,749,223
1995	27,956,935	9,692,816	37,649,751
1988	6,697	573,465	580,162
1985	0	544,242	544,2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 발췌 정리

(2) 품목별 교역 현황

2012년 기준 한국의 몽골에 대한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과 부속물로서, 전체 수출의 26.5%인 미화 1억1,479만달러를 기

1) The 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Arbitration of Mongolian", 2012.12.20. p.1.

록하였다. 2위는 전체 수출의 22.3%인 9,654만 달러를 기록한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며, 3위는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 4위는 철강제품, 5위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의 순위다. 수출품의 주종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용임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의 대몽골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US\$)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1	2012
		수출총계	349,873,636	433,456,510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12,303,908	114,793,710
2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6,071,277	96,535,813
3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1,266,042	42,692,527
4	73	철강의 제품	12,044,704	18,091,312
5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4,212,563	17,777,507
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9,720,734	14,136,492
7	22	음료, 알코올, 식초	12,343,859	13,516,922
8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549,561	12,245,754
9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용품류, 화장용품류	10,483,704	10,746,62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 미화 1천만 달러 이상만 발취 정리

한편 2012년 기준 한국이 몽골로부터 수입한 품목 중 1위는 광·슬랙·회제품으로서, 전체 수입의 83.4%인 4,471만달러를 기록하였. 그 다음 2위는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이고, 3위는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과 의류, 4위는 의류와 부속품, 5위는 모피를 제외한 원피와 가죽의 순이다. 다시 말해 1위와 2위는 자연자원이고 3위와 4위는 의류이며, 5위는 원피와 가죽 등 동물가죽이다.

〈표 3〉 한국의 대몽골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US\$)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1	2012
		수입총계	60,622,796	53,598,174
1	26	광, 슬랙, 회	36,710,747	44,710,457
2	25	소금,황,토석류,석고,석화,시멘트	2,783,819	4,313,657
3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755,107	2,120,781
4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105,272	676,942
5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810,610	459,28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 5대 수입품목 발췌정리

2. 한·몽골 투자 현황

2011년 기준 몽골에 투자한 국가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순이다. 한국은 전체 투자금액의 2.93%인 미화 3억3,774만달러를 투자하여 순위로는 7위를 기록하였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표 4〉 대몽골 국가별 투자금액 현황

(단위 : US\$ 1,000)

순위	국가명	비율 (%)	총액	기간	연도	
				1990-2004	2005	2011
1	중국	31.7	3,650,997	441,786	227,922	1,015,265
2	네덜란드	23.2	2,667,036	5,266	222	1,816,714
3	룩셈부르크	9.0	1,037,196	2,912	1,809	476,625
4	영국	7.5	861,441	48,394	5,0343	610,933
5	싱가폴	5.5	627,075	8,513	4,646	402,738
6	캐나다	4.2	487,596	174,207	1,542	72,288
7	한국	2.9	337,736	85,180	19,004	54,973
8	미국	2.5	292,658	45,725	5,564	127,23
9	홍콩	1.8	207,007	25,033	773	54,367
10	일본	1.6	184,752	66,208	5,8410	21,461

자료 : 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투자건수별로는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인 1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 다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5〉 대몽골 국가별 투자건수 현황

(단위 : 건수)

순위	국가명	비율 (%)	총건수	기간	연도				
				1990-2004	2005	2010	2011	2012.6.	
1	중국	49.11	5,951	1,534	532	376	434	214	
2	한국	17.82	2,159	632	203	117	122	64	
3	러시아	6.74	817	433	54	17	34	14	
4	일본	4.19	508	190	29	23	35	22	
5	미국	2.38	288	98	19	14	36	11	
6	영국	2.01	243	27	9	37	67	25	
7	독일	1.57	190	102	10	7	9	10	
8	싱가폴	1.45	176	52	9	22	31	22	
9	홍콩	1.33	161	54	9	27	20	12	
10	베트남	1.28	155	25	14	8	3	1	

자료 : 상동

3. 한·몽골 무역중재 현황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몽골 관련 중재건수는 <표 6>에서 보듯이 2004년, 2009년, 2010년, 2012년 각 1건씩 총 4건에 불과하다. 한국기업이 중재신청을 한 경우가 3건이고, 몽골기업이 중재신청을 한 건수는 1건뿐이다.

중재신청금액은 미화 15만달러부터 571만달러까지 다양하다. 중재신청사유는 대금결제 요청, 물품대금지급 요청, 서비스이용료 미지급, 용역대금 미지급 등이며, 중재처리내용은 화해판정이 1건, 중재판정은 3건이었다.

〈표 6〉 몽골 관련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US\$)

연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금액	원인	처리내역
2004	한국기업	몽골기업	517,459	물품대금지급	화해판정
2009	한국기업	몽골기업	5,715,500	대금결제	일반판정
2010	한국기업	몽골기업	150,000	서비스이용료미지급	일반판정
2012	한국기업	몽골기업	268,640	용역료미지급	일반판정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Ⅲ. 몽골 중재제도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몽골 중재제도의 발전과정

(1) 중재제도의 탄생

몽골 중재제도는 193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중재는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 195명 중에서 164명의 찬성과 내각위원회의 중재제도 도입 결의에 따라 1960년 7월 2일 몽골상공회의소에 단 1명의 중재인으로 몽골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를 창립한 것이 시초이다.

몽골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the Arbitration Commission of the Mongo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현장을 수정하여 외국무역중재위원회(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을 설립하고 중재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재업무가 시작되었다.²⁾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동유럽 상호경제원조위원회(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OMECON) 회원 국가들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과 관련한 국가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민사상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각 회원국은 본 조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제도를 수정하기로 하는 공동서면 합의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몽골은 몽골상공회의소 외국무역중재법원(the Foreign Arbitration Court of Mongo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으로 개칭하는 등 중재기관을 격상시켰다.

몽골상공회의소 외국무역중재법원은 국내분쟁은 취급하지 않고 국제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울란바토르에 있는 본부에서는 중재 관할 확대를 위하여 국제분쟁만이 아니라 국내분쟁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칭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몽골 국립중재법원(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으로 개칭하였다.³⁾

(2) 중재법의 제정과 개정

1960년 몽골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가 탄생할 당시에는 중재규칙은 제정되었으나, 독립된 중재법은 없었다. 몽골민법에 중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다. 그러나 몽골에 기업과 각종 단체가 증가하면서 분쟁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The Arbitration and Business Law", National Arbitration Press, No.01(06), 2005.

3) Batching Batbayer(Attorney) Anderson & Anderson. LLP, "The Arbitration Law in Mongolia", Ulaanbaatar Office, 2007.

이에 따라 1995년 몽골외국무역중재법(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Law)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몽골외국무역중재법의 제정은 국제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에 대한 경제와 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분쟁은 중재법원이 관여할 수 없었다. 특히 국내 중재판정은 집행할 수 없었고, 재산을 압류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법원의 협조도 받을 수 없었다.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9일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중재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나름대로 국제기준을 수용한 중재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중재법으로 1995년에 중재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국제분쟁과 국내분쟁이 모두 중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 중재법에 따라 알선규칙, 임의중재규칙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6월 16일 새로운 중재규칙이 제정되면서 오늘날의 중재제도로 발전하여 왔다.⁵⁾

(3) 기관중재 및 임의중재 실시

몽골은 중앙 및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중재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중재와 당사자합의에 의한 임의중재제도가 있다. 기관중재기관은 고객 이익을 목적으로 제조업체, 소비자 또는 협회단체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산업 및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영리법인단체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기관중재기관은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며, 임의중재는 몽골국립중재법원에서 제정한 모델 중재규칙에 따르도록 홍보하고 있다.⁶⁾

2. 몽골국립중재법원의 개황

(1) 조직

몽골은 1960년대에 도시와 지방에 산업, 공공단체, 농업협작, 중소기업, 편의점 등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판매계약, 상업계약, 고용계약, 노동계약, 협력계약, 합작투자계약, 대출계약, 임차료계약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 있는 1개의 중재기관으로는 도시와 지방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65년 6월 16일 전국 각 지역에 중재센터의 지부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몽골의 21개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몽골 중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화해 등 우의적인 분쟁해결과 각 지부들의 운영을 지

4) The Mongo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Law of Mongol, 1995.

5)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The Regulation on giving support from the National Arbitration Court to Ad hoc Arbitration", 2003.

6) 전계서.

도하고, 중재 관련 학술조사, 세미나 개최, 분쟁해결 제도의 홍보, 중재기관간의 협력 증진, 중재절차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적정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다.7)

(2) 중재인 및 중재처리 현황

현재 몽골국립중재법원은 몽골상공회의소와는 별개 법인이며,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총 157명의 중재인을 위촉하여 두고 있다. 중재인의 자격은 대학 졸업생, 25세 이상, 중재인의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중재인의 직종은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공인회계사 등을 고루 분포되어 있다(<표 7> 참조).8)

〈표 7〉 몽골국립중재법원의 중재인 현황(2013)

직종별	수도(국내중재인)	지부	합계
법조계	19(1)	17	37
실업계	15(1)	14	30
학계	11(1)	9	21
공공 단체 및 기타	23	21	46
공인 회계사 및 변리사	12	11	23
합계	85	72	157

자료 :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Arbitration of Mongolia". 2011.12.20.

몽골국립중재법원의 중재처리건수는 <표 8>에서 보듯이 몽골국립중재법원 출범 이후 총 36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960년 설립 후 1995년까지 3건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6건, 2011년에는 46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9)

〈표 8〉 몽골국립중재법원의 국제 중재 접수처리 현황

연도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1995년 이전	3	2001	8	2007	31
1996	6	2002	10	2008	36
1997	11	2003	30	2009	38
1998	9	2004	27	2010	42
1999	5	2005	29	2011	46
2000	3	2006	28	총계	362

자료 : 상 동

7)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Arbitration of Mongolia, 2011.12.20.

8) 김석철, "몽골의 중재제도와 한국기업의 몽골진출 시사점" 한·몽·중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 2013.7.

9) 몽골중재법 제5조 제2항, 제3항, 제8항 참조

IV.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1. 중재의 대상과 합의

몽골중재법은 “법을 당사자들 간에 유형재산권 혹은 무형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한국의 중재법이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정·신속하게 해결”¹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보듯이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 반면 몽골중재법은 유형재산과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재산 등 재산의 형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이 아닌 형사사건, 가족·친족 간의 관계, 법원과 기타 공적인 기관 및 공무원에 관련된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¹²⁾ 그리고 몽골민사소송법 제13조 2항에서는 “법, 몽골국제계약,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국민과 법인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중재는 중재합의가 전제조건이 되며,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 중재합의에는 발생한 분쟁에 대한 독립된 합의, 계약 등의 합의, 당사자 간에 편지·전신 등 교환된 서신에 의한 합의, 중재조항 포함 문서를 참조하는 합의도 해당된다.¹⁴⁾ 장래 발생할 분쟁에 대한 계약 등의 중재조항도 유효하다. 이것은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한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중재절차 이전이나 절차 중에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69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¹⁵⁾

2. 중재판정부 구성과 권한

(1) 중재판정부 구성과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는 1인 혹은 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당사자들은 중재절차를 진행할 중재인 숫자를 합의할 수 있다. 만약 중재인 숫자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면 3인 중재인

10) 몽골중재법 제1조(목적)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gulate relations pertaining to arbitration proceedings of disputes over property or non-property rights between entities.

11) 양병희 등, 『주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006.

12) 몽골중재법 제7조(관할권이 없는 중재) Subject to Court, other authorized bodies and officials are not subject to jurisdiction of arbitration.

13) 몽골중재법 제6조 제11항 참조

14) 몽골중재법 제11조(중재합의) 참조

15) 몽골중재법 제13조(중재판정이행을 위한 법원의 보전)

으로 한다.¹⁶⁾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중재인 선정은 아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중재인이 될 수 없는 자

중재법원의 구성원(Member the Constitutional Court), 판사(Judge), 검사(Procurator), 수사관(Enquiry officer), 조사관(Investigator), 법원결정집행관(Court decision enforcement officer), 종전에 본분쟁의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나 공증인(Attorney of a notary), 법적인 규정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다.¹⁷⁾ 이 조항은 한국 중재법에는 없다.

2) 중재인 선정 및 법원의 중재인 선정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수는 3명이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2명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3인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을 요청받은 후 30일 내에 각자가 선정하지 않거나 2명의 중재인이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 선정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1인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에 1인 중재인 선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¹⁸⁾

중재인 선정 요청을 받은 법원은 법에서 중재인이 가능한 자,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 당사자 간에 합의가 가능한 자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재인으로 선정한다.¹⁹⁾ 동 조항도 한국의 중재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2) 중재인 기피, 직무불이행, 보궐선정절차

1) 중재인 기피

중재인 기피는 당사자 합의로 할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기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판정부가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신청 당사자는 30일 내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법원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중재인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²⁰⁾ 동 조항은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16) 몽골중재법 제14조(중재판정부)

17) 몽골중재법 제15조(중재인 선정절차) 제2항

18) 몽골중재법 제15조 4항, 5항, 6항

19) 몽골중재법 제15조 9항 참조

20) 몽골중재법 제17조 참조

2) 중재인의 직무수행 불이행 및 보궐 선정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의 권한은 사라진다. 중재인이 사임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²¹⁾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보궐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절차에 따른다.²²⁾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3)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임의처분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으로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관할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거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3. 중재절차

(1) 당사자의 동등한 대우, 절차합의, 중재개시, 언어

양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청구요구, 거절, 진술 그리고 기타 관련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²³⁾ 중재절차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²⁴⁾

중재장소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분쟁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심리, 전문가, 물품검사, 재산·서류 등의 조사를 다른 장소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²⁵⁾ 이는 한국 중재법과 동일하다.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별도합의가 있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된다.²⁶⁾ 그리고 중재언어는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몽골어로 하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언어로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²⁷⁾

중재개시일의 기준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언어는 당사자 별도 합의가 없

21) 몽골중재법 제18조 참조

22) 몽골중재법 제19조 참조

23) 몽골중재법 제22조 참조

24) 몽골중재법 제23조 참조

25) 몽골중재법 제24조 참조

26) 몽골중재법 제25조 참조

27) 몽골중재법 제26조 참조

는 경우에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할 수 있으며, 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개최지인 한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몽골은 판정부의 언어 결정규정이 없으며, 몽골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에는 영어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청서와 답변서, 심리, 당사자 해태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몽골민사소송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인 중재기관, 신청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주소, 신청내용, 요구사항, 증거, 신청금액, 첨부서류목록 등을 기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을 인정·이행·거부·반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변경할 수도 있다.²⁸⁾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서면 혹은 구술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심리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일방당사자가 요구서를 제출하면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조사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감정서나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²⁹⁾

한편 몽골은 서면심리를 합의한 경우에도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두심리를 해야 한다.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서를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³⁰⁾ 동 규정은 한국의 중재법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3) 감정인, 제3자 보조, 비밀보호, 법원협조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감정인이 필요한 정보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인을 구술심리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³¹⁾

28) 몽골중재법 제27조 참조

29) 몽골중재법 제28조 참조

30) 몽골중재법 제29조 참조

31) 몽골중재법 제30조 참조

당사자가 중재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대리인, 통역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³²⁾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알게 된 정부, 기관, 개인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³³⁾

일방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받아 법원에 증거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언어불통에 대한 협조나 비밀보호는 한국의 중재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다.

4. 중재판정과 절차종료

(1) 분쟁실체 적용법, 중재판정방법, 화해판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지정한 법이 없는 경우는 분쟁과 가장 밀접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계약에 의거 판단하고 해당거래에 적용될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³⁵⁾

당사자 간의 별도합의가 없는 한 3인 이상의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을 결정할 수 있다.³⁶⁾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중재절차 중에 화해가 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하고, 화해 내용대로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화해중재판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³⁷⁾

(2) 중재판정의 형식, 내용, 절차종료, 판정정정, 해석, 추가판정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중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중재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인의 성명, 판정장소, 날짜, 당사자 합의나 화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의 법률적 근거, 중재비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재판정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법원이나 중재에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³⁸⁾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중재절차는 중재판정, 신청인의 중재신청철회, 중재종료합의, 중재판정부의 중재 계속 불가능의 판단, 중재비용 미지급 등의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종료된다. 단 신청인이 중재철회 요청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이익이 있다고 인정

32) 몽골중재법 제31조 참조

33) 몽골중재법 제32조 참조

34) 몽골중재법 제33조 참조

35) 몽골중재법 제34조 참조

36) 몽골중재법 제35조 참조

37) 몽골중재법 제36조 참조

38) 몽골중재법 제37조 참조

할 때에는 계속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³⁹⁾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판정의 오기·오산, 기타 유사한 오류의 정정, 중재판정의 특정조항이나 문단에 대한 해석, 중재판정에 누락된 신청조항에 대하여 추가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이나 해석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판정은 60일 이내에 판단하여야 한다. 추가판정은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도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기·오산, 기타 오류를 정정할 수도 있다.⁴⁰⁾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5.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 취소의 소

당사자는 중재지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래 사유에만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거나, 중재합의가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지정법이 없는 경우 몽골의 중재법에 근거 무효인 경우
- ② 중재판정부가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 등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신청요청, 거절, 진술, 기타증거서류 등에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등 당사자들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④ 중재합의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중재판정, 중재합의된 것과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아닌 것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분쟁내용이 중재대상으로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⑥ 중재판정이 몽골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문제를 침해할 때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⁴¹⁾ 한국의 중재법에서는⑤번과 ⑥번의 사유는 법원의 직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몽골의 경우 당사자 요구로 되어 있다.

(2) 중재비용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성질과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비용계획을 세워 중재절차의 실질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비용은 중재인 수당, 중재절차 중에 발생된 중재인의 비용, 지불되지 않은 비용, 증인비용,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판정부에서 쓴 비용,

39) 몽골중재법 제38조 참조

40) 몽골중재법 제 39조 참조

41) 몽골중재법 제40조 참조

중재기관의 서비스비용 등이다.

만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금액 전액으로 판정이 나면 피신청인이 중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전액 기각된 판정이 나면 신청인이 비용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금액의 일부 판정은 패소비용에 따라 각기 나누어 비용을 부담한다.⁴²⁾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표 9〉 몽골의 중재요금표

국내요금(MNT)		국제요금(US\$D)	
분쟁금액	중재비용	분쟁금액	중재비용
0-10,000	1,500 MNT	100	미화 50
10,001-50,000	3,000 MNT + 10,000 MNT 초과액의 3%	101-1,000	미화 60 + 미화 100 초과액의 4%
50,001-100,000	10,000 MNT + 50,000 MNT 초과액의 4%	1,001-5,000	미화 300 + 미화 1000 초과액의 3%
100,001-200,000	20,000 MNT + 100,000 MNT 초과액의 4%	5,001-10,000	미화 350 + 미화 5,000 초과액의 3%
200,001-300,000	30,000 MNT + 200,000 MNT 초과액의 4%	10,001-50,000	미화 500 + 미화 10,000 초과액의 3%
300,001-400,000	40,000 MNT + 300,000 MNT 초과액의 4%	50,001-100,000	미화 2,100 + 미화 50,000 초과액의 3%
400,001-500,000	50,000 MNT + 400,000 MNT 초과액의 4%	100,001-200,000	미화 3,750 + 미화 100,000 초과액의 3%
500,001-800,000	80,000 MNT + 500,000 MNT 초과액의 3.5%	200,001-500,000	미화 6,800 + 미화 200,000 초과액의 2%
800,001-1,000,000	100,000 MNT + 800,000 MNT 초과액의 3.5%	500,001-1,000,000	미화 13,000 + 미화 500,000 초과액의 1%
1,000,001-5,000,000	150,000 MNT + 1백만 MNT 초과액의 2.5%	1,000,001-2,000,000	미화 21,500 + 미화 1,000,000 초과액의 1%
5,000,001-10,000,000	250,000 MNT + 5백만 MNT 초과액의 2.5%	2,000,001-5,000,000	미화 32,000 + 미화 2,000,000 초과액의 0.5%
10,000,001-50,000,000	400,000 MNT + 1천만 MNT 초과액의 2%	5,000,001-10,000,000	미화 48,000 + 미화 5,000,000 초과액의 0.25%
		10,000,001 이상	미화 61,000 + 미화 10,000,000 초과액의 0.1%

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이나 몽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만약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42) 몽골중재법 제41조 참조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문 정본 및 중재합의서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몽골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몽골법원이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할 때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⁴³⁾

그러나 법원은 동법 제40.2조의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될 때, 중재판정이 효력이 없게 되거나 중재판정국가의 법원이 중재판정을 중지, 무효화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⁴⁴⁾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V. 몽골 중재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1. 몽골 중재환경에 대한 이해

몽골은 러시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으며, 지금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국가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UNCITRAL Arbitration Model Law를 채택하자 몽골도 이것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몽골의 중재법은 국제사회에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중심주의와 공산주의 정신이 잔존하고 있다. 중재전문가에 의한 민간 주도의 중재운영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2. 몽골중재기관의 임의중재 지원

몽골중재법이 임의중재를 인정하면서 몽골국립중재법원은 임의중재규칙을 제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한국도 임의중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제적인 내용 및 운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중재대상 기준의 차이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몽골중재법에서는 유형 혹은 무형재산을 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유·무형의 재

43) 몽골중재법 제42조 참조

44) 몽골중재법 제43조 참조

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 간의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즉 노사관계, 친족관계 등 재산과 관계없는 것은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4. 중재인 자격기준의 명문화

몽골중재법에서는 한국의 중재법에는 없는 중재인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 즉, 중재법원의 구성원, 판사, 검사, 수사관, 조사관, 집행관, 분쟁의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나 공증인,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은 중재인이 될 수 없다.

5. 법원의 중재인 선임 기준 명문화

몽골중재법은 법원이 중재인으로서 선정이 가능한 대상자 중에서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가능한 자인지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는 없는 명문규정이다.

6. 중재판정부의 중재언어 결정권 부재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중재법은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몽골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몽골어가 아닌 언어로 중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어를 미리 약정해야 한다.

7. 서면심리 합의 시에도 구술심리 기회 제공

몽골중재법에서는 구술심리를 합의하였을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구술심리를 요구하면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 서면심리 합의 시에는 구술심리가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8. 당사자의 통역 등의 협조 요청과 비밀보호의무 명문화

한국은 중재규칙에 중재절차의 비공개와 변호사에 준하는 대리인의 중재신청, 사무국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통역 또는 번역의 사무국에서의 준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중재법에 당사자가 중재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변호사·대리인·통역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알게 된 정부, 기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직접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중재판정부뿐만 아니라 당사자까지도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한국의 중재법에는 없다.

9. 중재판정취소의 법원직권 규정 부재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당사자 신청과 법원직권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나, 몽골은 당사자 신청으로만 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직권사유도 몽골은 당사자 신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간의 교역 및 중재 현황,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특징 등을 UNCITRAL Arbitration Model Law를 수용하여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비교 분석한 후 차이점을 중심으로 몽골 중재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몽골의 중재환경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몽골의 중재법은 러시아의 영향으로 UNCITRA 모델법을 도입하여 형식상은 국제적 수준이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

둘째, 몽골 중재기관은 임의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임의중재규칙을 제정하고 홍보를 하는 등 중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몽골은 중재대상의 기준이 유·무형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중재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법원과 국가공무원이 관련된 분쟁, 노사관계, 친족관계, 형사 사건 등은 중재대상이 아니다.

넷째, 중재인 자격에서 중재인이 될 수 없는 자를 명문화하고 있다. 중재법원의 구성원, 판사, 검사, 수사관, 조사관, 집행관, 분쟁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공증인, 겸업이 금지된 공무원은 중재인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법원에서 중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다. 중재인으로 선정이 가능한 자 중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양당사자의 합의가 가능한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언어를 몽골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

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없다.

일곱째, 당사자 간에 서면 심리를 합의하여도 당사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구술심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덟째, 당사자가 중재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통역 협조를 직접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비밀준수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아홉째, 중재판정취소의 대상에 당사자 신청만 있고, 법원직권사항은 없다.

몽골의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지적한 9가지를 유의한다면 나머지는 한국이나 모델중재법과 내용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몽골의 중재제도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이 한·몽골 간의 무역거래에 따른 분쟁 해결에 기여하게 되어 교역 증대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석철, 『무역클레임 중재 실무론』, 청목출판사, 2013.

_____, “몽골의 중재제도와 한국기업의 몽골진출 시사점”, 『한·몽·중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 한국중재학회, 2013.

양병희 등, 『주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006.

Batching Batbayer(Attorney) Anderson&Anderson, LLP. “The Arbitration Law in the Mongolia,” 『Ulanbaater office』, 2007.

The Mongo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Law of Mongol”, 1995.

The 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The Arbitration and Business Law”, 『National Arbitration Press』, No.01106, 2005.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The Regulation on giving support from the National Arbitration Court Ad-hoc Arbitration”, 2003.

The 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Arbitration of Mongolian”, 2012.

<관련 법령>

몽골중재법

몽골국립중재법원 중재규칙

한국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Arbitration Systems between Mongol and Korea

Suk-Chul Ki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compared with Korean Arbitration Law which was revis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Model Law. On the basis of this comparative study, certain differences are suggested:

First, the environment of Mongolian arbitration is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its operation and us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Second, the Mongol National Arbitration Court has established Ad-hoc Arbitration Rules and has promoted Ad-hoc Arbitration although it is an institu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Third, the arbitration objects are defined as the typ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Mongolia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Accordingly, court and officer disputes, family dispute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criminal matters are covered by the arbitration objects.

Fourth, Mongol Arbitration Law specifies the following persons disqualified for arbitrator appointment: the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procurator, inquiry officer, investigator, court decision enforcement officer, attorney, or notary who has previously rendered legal service to any party of the disputes, and any officials who are prohibited by laws to be engaged in positions above the scope of their duties.

Fifth, the arbitrator selection and appointment criteria should be documented, and the arbitrator should have the ability to resolve the disputes independently and fairly and achieve concord from both parties.

Sixth,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tion language should be Mongolian, and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decide on it.

Seventh, despite the agreement for a documentary hearing between the parties, there should b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n oral hearing if either of the parties requires it.

Eighth, if the parties do 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the parties can directly ask the translation service. They should also keep secrets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Ninth, the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is allow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arties, not by the authority of the court.

Except for the nine differences above, the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This paper serves to contribute to the furtherance in trad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Korea after the rapid and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Key Words : Mongolian Arbitration System, Mongol Ad-Hoc Arbitration, Mongol Arbitration Law, Mongol Arbitration Panel